

3. 法人稅法施行規則中改正令

財務部令 第1,968號 1994. 3. 12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납세지와 납세지정통지등)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

경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 제7조제6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2호서식과 같다.

⑥법 제7조제6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법 제7조제9항 본문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로 한다.

⑧영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계산조직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금융기관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영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영 제14조제4항의 산식”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5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 ×
$$\frac{\text{임대면적의 적수}}{\text{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4조제5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 ×
$$\frac{\text{임대면적의 적수}}{\text{건물 연면적의 적수}}$$

④영 제14조제4항의 산식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인 정기예금의 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⑤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⑦대통령령 제14080호 법인세법시행령 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5.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업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제7조제2항중 “사용인”을 “임원 또는 사용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21조의2 제3항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구상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②영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6-3호(4)호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제2호중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특별소비세·교육세 및 교통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①영 제30조제1호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유지·관리비”라 한다)중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유지·관리비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이 경우 수입금액비율을 기준수입금액비율로 나누어 나온 몫의 값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숫점 둘째자리이하를 절상한다.

유지관리비 ×

$$\left[1 - \frac{\text{제18조제9항에 규정된 당해 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text{제18조제3항각호에 규정된 해당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비율}} \righ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 제1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있어서는 제세공과금·수선비·인건비 등 사외로 유출되는 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영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상여등의 계산) 영 제35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인도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에서 “인도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제15조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및 동법 제50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6조제1호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으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에 제34호 내지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6.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헌안봉사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8.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43조의제2항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본문중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동목중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연면적 ÷ 150제곱미터 × 13.75제곱미터 × 2)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의 연면적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부속토지의 면적 - (건축물바닥면적 × 1.5))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 “허가조건”을 “신고기준”으로, “중기정비업”을 “건설기계정비업”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신고기준”으로 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화물유통촉

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

제18조제3항제1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속토지

(1)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2)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건축물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독립된 건축물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3)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제18조제3항제12호단서중 “(주택등 건물외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외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3호나목중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를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다만, 노천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면적)”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5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8.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11의2.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제18조제7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로 한다.

제18조제19항본문중 “영 제43조의2제10항 단서”를 “영 제43조의2제2항제2호 단서”로 하고, 동조제20항중 “법 제18조의3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제2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제18조제2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제3항제11호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제18조의2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으로, “동법 제26조제1항”을 “동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5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5.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제18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
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영 제43조제3항에서 “기타 재무부령
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다음 각호의 것
을 말한다.

1.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사업
2. 영화·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중 달
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중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4. 욕탕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목욕
장을 제외한다)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5. 미용업(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에 욕실등이 부설된 것으로서 그 설
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
을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
7항각호에 규정된 소비성 서비스업에
서 제외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
록한 전문 및 종합 휴양업
2. 자연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3.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및 녹음업

4. 체육관운영업중 체육도장업

⑨영 제43조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
하는 지방소재기업”이라 함은 조세감
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대도
시권(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에
서 대도시권에서 제외한 지역을 포함
한다)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을 말
한다.

제18조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
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으
로, “동법 제26조제1항”을 “동법 제19
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4중 “영 제46조의2제2호”를 “영
제46조의3제2호”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시설대여회사는”
을 각각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
흥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설
대여회사가”를 “시설대여회사 및 중소
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
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건설용중기계장비확인
서)”를 “(건설기계확인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우마·과수의 범위)”를
“(상각자산의 종류)”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영 제54조제1호의2”를 “영 제54조

제2호”로, “자산으로 한다”를 “자산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4조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종류란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제34조중 “연불조건”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연불가액”을 “장기할부가액”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이하 이 조에서 “특별감가상각비”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조정계산서상에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이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영 제53조에 규정된 상각부인액을 제외한다) 중 특별감가상각비 상당액

2. 처분한 자산의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잔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제1항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별지 제6-6(4)호서식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중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별지 제6-6(1)호 내지 제6-6(3)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 조정명세서”를 “별지 제6-6(1)호 내지 제6-6(3)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 조정명세서 및 제6-6(4)호서식의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로 하고, 동항제19호의3·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37호중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를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을)”로 한다.

제50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입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입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제58조제5항중 “영 제113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 제6항

을 삭제한다.

제59조의3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매 물가상승률”을 각각 “생산자물가상승률”로 한다.

제59조의4중 “영 제12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영 제124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의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에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제59조의11을 삭제한다.

제62조중 “영 제130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30조의2제2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표2]의 3505란의 용도별설비란중 “국제전신전화설비”를 “국제전신전화설비·무선전신전화설비”로 하고, 동표의 3810란 다음에 38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11	경비용 경보설비	경보 및 관제설비	5
------	----------	-----------	---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부표]·[별지 제3(1)호서

식 부표2]·[별지 제3(1)호서식(갑)]·[별지 제3(1)호서식(을)]·[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3(2)호서식]·[별지 제6-3(3)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갑)]·[별지 제6-5호서식(을)]·[별지 제6-14호서식(갑)]·[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60호서식(갑)]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15호서식]·[별지 제14(3)호서식]·[별지 제14(4)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6(4)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여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지에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종전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은 손금산입을 인정하도록 함(제11조).
- 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손금산입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식에 의한 성과급지급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함(제13조의2).
- 다. 기부자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제17).
- 라.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따라 취득하게 된 부동산은 이를 취득일부터 1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처분에정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제18조).
-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관련사업중 여행알선업·전세버스운송업·관광유람선업과

전문 및 종합휴양업을 접대비등의 손금인정한도가 축소적용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광관련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함(제18조의2).

〈재무부제공〉

성실시공 책임의식 공사튼튼 나라튼튼